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57

발의연월일: 2020. 9. 25.

발 의 자:윤후덕·김정호·전혜숙

이원욱 • 이형석 • 송갑석

박 정・고용진・우원식

윤관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은 공익성을 담보로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며, 공익활동을 하지 않고 자산만 축적하는 공익법인을 방지하거나 공익활동보다는 수익활동에 치중된 공익법인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익목적사업에 상당한 의무지출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의무지출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대통령령에서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의 1%를 의무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무지출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을 출연재산가액의 2%로 상향조정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제7호).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7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을 "100분의2(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발생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지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 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생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 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 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 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 6.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7.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 기 등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 명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7
<u>10</u>
0분의2(제16조제2항제2호가목
에 해당하는 성실공익법인등
이 발생주식총수 등의 100분
의 10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에는 100분의 3)를
8. (현행과 같음)

8. (생략) ③ ~ ① (생략)

③ ~ ① (현행과 같음)